

[상표분쟁]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매수, 판매한 중간 판매상의 손해배상책임 여부

- 고의, 과실 추정 BUT 판매자의 과실 불인정, 손해배상청구 기각: 서울중앙지방법원

2018. 6. 8. 선고 2017가합515607 판결



사안의 개요

- (1) 짝퉁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A, 주범 - 상표법위반죄 징역 10월 유죄 판결 확정
- (2) 주범 A는 도매상 G 에게 위조상품 판매, 일부 제품을 다시 중간판매업자 피고 B
가 매수함
- (3) 피고 B는 피고 D에게 위조상품 판매, 피고 D가 중국업자에게 판매함
- (4) 중간 판매상 피고 B : 상표법위반죄 기소, 1심 법원 - 유죄, 2심 법원 - 고의 부정,
무죄, 3심 법원 - 상고기각, 무죄 확정
- (5) 최종 판매자 D -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, 불입건

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쟁점 - 주범 아닌 중간 판매자 B,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,

상표법상 고의, 과실 추정 규정 및 판매자의 과실 인정 여부

판결요지 - 고의, 과실 불인정, 손해배상책임 부정

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상표권 침해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 B은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, 피고 D은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았을 뿐이며, 달리 피고 B, D이 G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위조품이 위조품임을 알면서 이 사건 위조품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.

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(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다21666 판결), 이는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, 추정일 뿐이다. 기초 사실과 갑 제 12, 19호증,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피고 B, D이 G로부터 공급받아 양도한 이 사건 위조품에 관하여 위조품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○ 피고 B, D은 오래전 같은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인데, 피고 B은 12년간 대학교 시간 강사를 하다가 2014년부터 회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, 피고 D은 학교에 다니면서 용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화장품 제품을 중국 유학생들에게 판매하였다.

○ 피고 B은 피고 A이나 E과 모르는 사이였고, 세미나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G를 알게 되어 학업에 병행하여 용돈 벌이로 화장품 판매를 하는 피고 D을 돕기 위하여 G로부터 이 사건 위조품을 양도받아 피고 D에게 양도하였다. 피고 B은 G로부터 이 사건 위조품에 관하여 '본사 공장에서 뒤로 뺀 물건이어서 가격이 저렴하다'는 식의 얘기만 들었을 뿐 위조품이라는 점은 듣지 못하였다. 피고 B은 G로부터 이 사건

위조품을 개당 9,300원에서 9,500원에 받아 100원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피고 D에게 양도하였고, 피고 D은 개당 300원의 이윤을 남기고 L, M 등 중간상에게 양도하였다.

○ 이 사건 위조품은 외관상 진품 화장품과 구분은 어려워 보이고, 가격은 정품 화장품의 시중 도매가 10,000원보다 약간 저렴하였을 뿐이다.

○ 피고 D은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품의 품질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피고 B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, 일부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도 하였다.

○ 피고 B, D이 이 사건 위조품이 위조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각각 정품의 시중 도매가에 근접한 가격에 매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, 피고 D이 피고 B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. 피고 B은 화장품 거래를 처음 했던 것으로 보이고, 피고 D에게만 이 사건 위조품을 양도하였을 뿐이다(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 B이 L에게 손해배상 취지의 물품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, L은 피고 B이 아닌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품을 매수한 사람이고, 물품대금지불각서는 피고 D이 피고 B으로부터 그 위조품을 양도받아 자신에게 매도한 것을 알게 된 L이 피고 B에게 요구함으로써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 B이 피고 D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건 위조품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).

따라서 피고 B, D에게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, 피고 B,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변리사24년/변호사16년, 특허심판소송, 민형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Service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